

표준거래계약서

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는(은) 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과(와) 다음과
같이 표준거래계약(이하 “이 계약”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
제1조 [목적]

이 계약서의 목적은 “갑”과 “을” 간 상품의 위·수탁거래에서 양 당사자 사이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함에 있다.

제2조 [기본원칙]

- ① “갑”과 “을”은 상호이익을 존중하고 이 계약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상호 공정한 거래관계와 동반성장을 추구한다.
- ② “갑”과 “을”은 상호의 신뢰와 공동의 노력을 바탕으로 “고흥군” 상품의 온라인 홍보 및 판로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3조 [상품의 판매위탁]

“갑”은 “을”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상품을 “갑”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및 제휴 채널을 통해 판매하고, “을”은 판매된 상품에 대한 위탁 판매수수료를 “갑”에게 지급한다.

제4조 [판매가격의 결정]

“을”은 “갑”에게 공급가, 판매가, 행사가를 제시할 수 있다. 다만 필요한 경우 “갑”과 “을”은 협의할 수 있으며, “갑”은 이 가격을 기준으로 유통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판매한다.

제5조 [상품정보의 제공 및 책임]

- ① “을”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일반정보 및 “갑”이 요청하는 상품의 주요정보를 상품판매 개시 이전에 “갑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- ② “을”은 “갑”에게 제공한 상품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되는 경우 즉시 “갑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“을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신체상·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“을”이 배상한다.

제6조 [검수기준 및 품질검사]

- ① “을”은 상품 판매를 위탁하면서 “갑”이 견본품 등을 요청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제공한다.
- ② “을”이 “갑”에게 판매를 위탁하는 상품은 “을”이 “갑”에게 제출한 견본품과 동일하여야 하며, 품질상 하자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.
- ③ “갑”은 “을”이 납품하는 상품에 대하여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가 필요한 경우 “을”에게 해당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“을”은 공인된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를 해당 상품의 납품 전에 “갑”에게 제출한다.
- ④ “을”이 “갑”의 정당한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“갑”은 외부 공인기관을 통하여 품질검사를 하고 이에 소요된 비용을 “을”에게 청구하거나, 판매정산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. 다만 상품의 특성상 추가적인 공인기관의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상품의 품질 적합 여부가 외관상 뚜렷이 판단될 수 있는 등 처음부터 품질검사 및 성분 검사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⑤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 결과 “을”이 판매를 위탁한 상품이 법적기준 또는 계약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불합격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“갑”은 해당 상품의 위탁판매중지 및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“을”이 시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.

제7조 [상품의 발주 및 판매]

- ① “갑”은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고객이 “을”의 상품을 주문하는 경우, 주문을 접수하는 다음 날 즉시 “을”에게 발주한다.

제8조 [상품의 배송]

- ① “을”은 상품 발주를 확인하고 “갑”과 협의한 기준출고일 이내에 상품을 지정된 수취인에게 신속하게 배송하여야 한다.
- ② “을”의 귀책 사유로 상품 배송이 지연되거나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, 이로 인한 손해는 “을”이 배상한다. “갑”은 “을”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손해배상책임을 “을”에게 부담시키거나,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
제9조 [포장]

- ① “을”은 “갑”과 협의하여 포장방법을 정하고 그 방법에 따라 상품의 배송 시에 파손 또는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고하게 포장하여야 한다.
- ② “갑”은 상품의 파손 또는 훼손 가능성이 있는 경우 “을”에게 포장방법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“을”이 제1항을 위반하여 배송과정에서 상품의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해는 “을”이 배상한다.

제10조 [상품판매 광고]

- ① “갑”은 “을”의 상품판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터넷쇼핑몰 배너 또는 별도 페이지를 통해 선전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로 한다.
- ② “갑”은 “을”의 상품판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판촉활동을 “갑”的 계획에 따라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“을”的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“을”은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.

제11조 [위탁판매 수수료 및 결제수수료]

- ① “을”이 “갑”에게 상품판매를 위탁함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율은 판매개시 전에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.
- ② “갑”은 판매기간 내에 상품판매 위탁에 따른 수수료율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2조 [상품판매대금의 정산 및 지급] * 첨부자료 참조

- ① “갑”은 월 2회 이내(1차 당월 25일, 2차 익월 15일)에 상품판매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결제수수료를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“을”에게 지급한다.
- ② “갑”은 상품판매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며, 대금 지급에 있어 위탁판매 수수료 외에 별도 공제할 비용이 있는 경우, 주문일자, 상품명, 상품가격, 공제금액, 공제금액 산출근거, 공제사유 등 상세 내역을 “을”에게 제시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“갑”이 제시한 상세 내역에 대하여 “을”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, “갑”은 신속하게 확인 결과를 “을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제13조 [상품의 교환·환불]

- ①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「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단순변심에

따른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, “갑”과 “을”은 이를 승낙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.

② “을”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파손되어 배송되거나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이 배송되어 고객이 상품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, “갑”과 “을”은 이를 승낙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.

③ 고객이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였으나, “을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“갑”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다. 이에 따른 비용은 “을”에게 사전 통지한 후 “을”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.

④ “갑”은 고객이 반송한 상품이 “을”에게 도달하기 전에 고객에게 상품구매금액을 환불 하여서는 아니된다. 단, “갑”의 부담으로 선환불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.

⑤ 상품의 교환·환불에 따른 왕복배송비는 제1항의 경우 고객이, 제2항의 경우 “을”이 각각 부담한다. “갑”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배송비를 “을”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.

제14조 [통지의무]

① “갑”과 “을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중빙서류를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1. 주소, 상호, 대표자 등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
2.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
3. 그 밖에 “갑”과 “을”이 계약에 따른 각자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②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통지는 이 계약에 명시한 주소에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.

제15조 [계약해지]

① “갑”과 “을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“을”의 판매 실적이 극히 부진하거나, 미수금 지불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체된 때
2. “갑” 또는 “을”이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거나, 발행 또는 인수한 어음수표의 부도처리, 기타 신용이 악화되어 본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거나,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
3. “갑” 또는 “을”의 사업의 폐지 기타 사정에 의하여 거래를 계속 할 수 없을 때

② “갑” 또는 “을” 이 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,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보로써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정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로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해지할 수 있다.

④ 이 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, 계약 해지에 관하여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16조 [계약의 효력]

① “갑”과 “을”은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, 계약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으며,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통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② 이 계약서의 내용은 “갑”과 “을” 사이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있으며, 그 변경 및 수정은 “갑”과 “을”이 해당 서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.

③ “갑”과 “을”은 본 계약의 변경이 필요할 때는 상호합의하에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종전에 체결한 계약은 무효가 된다.

20 년 월 일

“갑” : 주 소 :

상 호 :

대 표 자 : (인)

“을” : 주 소 :

상 호 :

대 표 자 : (인)